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5일, 박지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지혜의원)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현행 전력망 이용의 차별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

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선착순 원칙을 신뢰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접속 지연 우려 및 특례를 악용하는 위장 공동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에 우선 접속 요건과 사후 관리 방안을 엄격히 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